

1.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국립소록도병원에 치매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(전문경력관 나군)을 증원하며,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(6급2, 7급2, 전산 8급1)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7.00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정신건강지표·통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7급1)을 증원하고, 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에 초급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직 마련을 위해 간호직 직급 상향하는 내용으로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7.00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

보건복지부에 지능화·조직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전문적·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,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,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6. 00. ~ 6. 0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6항 중 “보건복지상담센터”를 “정보보호팀, 보건복지상담센터”로, “기술서기관”을 “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및 제16항을 각각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7항을 제1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⑰ 다자·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1. 세계보건기구(WHO)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정책 수립·시행 및 총괄
2.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
3.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4.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 총괄
5.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
6.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
7. 자유무역협정(FTA) 및 세계무역기구(WTO)의 보건복지분야 협상

에 관한 사항

8.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정

9.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

제3조의2제9항(중전의 제16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자·통상담당관”을 “정보보호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·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관련 내규 제·개정

2. 보건복지부,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

3.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

4.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

5. 사이버공격 대응능력, 침해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 조치

6.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, 훈련 및 인식 개선

7. 對도청 탐지 관리 및 운영

8.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9.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0.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

11.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등 점검 및 평가

12.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

13. 민간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, 긴급조치 및 대응에 관한 사항

14. 민간의료기관침해사고대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5. 기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

제36조제10항 중 “1명) 및”을 “1명),”으로, “1명”을 “1명) 및 국립장기 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(5급 1명, 6급 1명)”으로 한다.

제3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신속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분쟁조정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6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둔다.

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331”을 각각 “332”로 하고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18”을 “319”로 한다.

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221”을 각각 “222”로 하고, 학예연구사 1 다음에 “전문경력관 나군(치매관리 특수치료 담당) 1”를 신설한다.

별표 11 제39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2년 9월 11일) 다음에 “총계 2”를 신설하고, 총계 2 다음에 “일반직 계 2”를 신설하며, 총계 및 일반직 계 “2”를 각각 “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5 다음에 “행정주사·사회복지주사·보건주사·전산주사·약무주사·시설주사·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2”를 신설하며, 행정주사·사회복지주사·보건주사·전산주사·약무주사·시설주사·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2 다음에 “행정주사보·사회복지주사보·보건주사보·전산주사보·방송통신주사보·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”를 신설하고, 보건연구사 1 다음에 “5. 제39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3년 6월 30일)”를 신설하며, 행정주사보·사회복지주사보·보건주사보·전산주사보·방송통신주사보·약무주

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 다음에 “행정서기·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”
를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「행정기관의 조직과
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
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,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정보보호팀의
소관 사무는 정보화담당관에서 수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의2(기획조정실) ① ~ ⑤ (생략)	제3조의2(기획조정실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기획조정실에 정책통계담당관, 정보화담당관, <u>보건복지상 담센터</u> , 혁신행정담당관, 규제 개혁법무담당관, 기획조정담당 관, 재정운용담당관, 양성평등 정책담당관, 국제협력담당관, 다자·통상담당관 및 양자협력 담당관을 두되, 각 담당관 및 센 터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<u>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⑥ ----- ----- <u>정보보호팀,</u> <u>보건복지상담센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정보보 호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</u> ----.
⑦ (생략)	⑦ (현행과 같음)
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	⑧ ----- -----.
1. ~ 12.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<u>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사항</u>	<u><삭 제></u>
14. <u>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</u>	<u><삭 제></u>

15. (생 략)

⑨ ~ ⑮ (생 략)

<신 설>

15. (현행과 같음)

⑩ ~ ⑮ (현행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)

⑰ 다자·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1. 세계보건기구(WHO)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정책 수립·시행 및 총괄

2.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

3.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
4.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 총괄

5.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

6.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

7. 자유무역협정(FTA) 및 세계무역기구(WTO)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

8.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립 및 조정

⑩ 다자·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1. 세계보건기구(WHO)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정책 수립·시행 및 총괄

2.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

3.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
4.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 총괄

5.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

6.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

7. 자유무역협정(FTA) 및 세계무역기구(WTO)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

8.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정

9.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

9.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

⑨ 정보보호팀장-----
-----.

1.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·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관련 내규 제·개정

2. 보건복지부,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

3.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

4.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

5. 사이버공격 대응훈력, 침해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 조치

6.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, 훈련 및 인식 개선

7. 對도청 탐지 관리 및 운영

8.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9.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

<u>보 및 자료의 수집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10.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</u> <u>11.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등 점검 및 평가</u> <u>12. 개인정보통합관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</u> <u>13. 민간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, 긴급조치 및 대응에 관한 사항</u> <u>14. 민간의료기관침해사고대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15. 기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</u>
<u>⑰ (생 략)</u> 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⑨ (생 략) ⑩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(4급 2명), 조제·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(6급 1명, 7급 1명)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	<u>⑱ (현행 제17항과 같음)</u> 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명), ----- ----- -----

1명(7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제39조(한시정원) ① 삭제 ②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1명)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(5급 1명, 6급 1명)---. 제39조(한시정원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신속하고 공정한 건강보험분쟁조정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6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둔다.
--	-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

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공무원 정원표(제36조제1항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		.		.	.		
		.		.	.		
총계				<u>331</u>	<u>332</u>	+1	
일반직	계			<u>331</u>	<u>332</u>	+1	
		.		.	.		
		.		.	.		
3급	또는	4급 이하		<u>318</u>	<u>319</u>	+1	
		.		.	.		
		.		.	.		

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4]

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(제36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221</u>	• <u>222</u>	+1
일반직 계	<u>221</u>	<u>222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전문경력관 나군(치매관리 특수치료 담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
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1]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39조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	· ·	· ·	
5. 제39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 기한: 2023년 7월 6일)	<신 설>	5. 제39조 제6항 관 련 한시 정 원 (존 속 기 한 : 2023년 7 월 6일)	
총계	<신 설>	5	+5
일반직 계	<신 설>	5	+5
행정주사·사회복지주사·보건주 사·전산주사·약무주사·시설주사·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	<신 설>	2	+2
행정주사보·사회복지주사보·보 건주사보·전산주사보·방송통신 주사보·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	<신 설>	2	+2
행정서기·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	<신 설>	1	+1